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

2365

제안년월일 : 2021년 4월 26일

제 안 자:교 통 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정진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2259호), 송아량 의원 외 11 명이 발의한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2262호)을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4.26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.

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는 시장이 공사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한 검사와 보고를 명할 수 있지만, 그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
- 따라서, 시장이 공사의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, 영업 수익의 현저한 감소 등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 사장에게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사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

하는 것임

○ 또한, 이 밖에 공사의 보고 대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로 한정하여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서울교통공사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보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5조의2제1항)
- 나. 경영 개선 요구의 요건을 신설함(안 제32조제2항)
- 다. 사장의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책무를 규정함(안 제32조제3항)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의회"를 "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"로 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와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비의 절감, 부채의 감축, 경영계획의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.
 - 1.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
 - 2.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
 - 3. 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소,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
 - 5.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

- 6.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
- 7.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① 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① -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행

1. ~ 9. (생략)

혅

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 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와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 하여 경비의 절감, 부채의 감축, 경영계획의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.

- 1.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
- 2.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
- 3. 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 소,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

고 인정되는 경우

- 4.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

 인 경우
- 5.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 적인 경우
- 6.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
- 7.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경영 개선 요 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